

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

※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,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.

(제1쪽)

I. 도급인 사업장 정보

① 사업 장명	② 사업자 등록번호	③ 사업장 관리번호	사업 개시번호	사업장 소재지	④ 근로자 수	⑤ 재해 현황				⑥ 업종
						사고 사망 자 수	질병 사망 자 수	사고 재해 자 수 (사망 포함)	질병 재해 자 수 (사망 포함)	

II. 수급인 사업장 정보

⑦ 사업 장명	사업자 등록번호	⑧ 사업장 관리번호	사업 개시번호	사업장 소재지	⑨ 근로자 수	⑩ 재해 현황			
						사고 사망 자 수	질병 사망 자 수	사고 재해 자 수 (사망 포함)	질병 재해 자 수 (사망 포 함)
⑪ 합계	총 () 개소				명	명	명	명	명

III.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

⑫ 도급인·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	⑬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	⑭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
명	명	명
⑮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(‰)	⑯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(%)	
‰	%	

작성자 소속 및 성명:

작성자 전화번호:

작성일 년 월 일

원도급 사업주

(서명 또는 인)

고용노동부 (지)청장 귀하

작성방법

I. 도급인 사업장 정보

- ① 사업장명: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.
- ② 사업자 등록번호: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사업장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: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를 적습니다.
- ④ 근로자 수: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.
- ⑤ 재해현황: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*를 사고사망자 수, 질병사망자 수, 사고재해자 수(사망포함), 질병재해자 수(사망포함)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.
- * '산업재해'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의 '산업재해'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.
- 사고사망자 수: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.
 - * 사고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(운수업,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)·체육행사·폭력행위에 의한 사망, 통근 중 사망,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
 - 질병사망자 수: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.
 - 사고재해자 수(사망 포함):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(사고사망자 수 포함)를 적습니다.
 - * 사고재해자 수(사망 포함)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 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
 - 질병재해자 수(사망 포함):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(질병사망자 수 포함)를 적습니다.
- ⑥ 업종: 국가데이터처(www.kostat.go.kr)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(5자리) 업종명을 적습니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(5자리) 업종명을 적습니다.

II. 수급 사업장 정보

- ⑦ 사업장명: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.
- ⑧ 사업장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: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를 적습니다.
- *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,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를 적습니다.
- ⑨ 근로자 수*
- *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.
- 해당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:1 계약한 경우: 해당연도(1~12월)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.
 -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: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[산식] (근로자 수×근로일수) + (근로자 수×근로일수) + + (근로자 수×근로일수) / 365일
- (작성 예) 10일은 10명, 20일은 20명,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
- $$(10 \times 10) + (20 \times 20) + (5 \times 30) = 650(\text{일} \times \text{명}) / 365(\text{일}) = 2\text{명}(\text{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})$$
- *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(日)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 즉,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,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.

⑩ 재해현황

-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*를 사고사망자 수, 질병사망자 수, 사고재해자 수(사고사망자 수 포함), 질병재해자 수(질병사망자 수 포함)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.
- * '재해현황'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'재해현황' 참고

- ⑪ 합계: 총 수급업체 수,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·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.

III.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

- ⑫ 도급인·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: ④(도급인 근로자 수)+⑩(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)
- ⑬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: ⑤(도급인 사고사망자 수)+⑩(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)
- ⑭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: ⑤(도급인 사고재해자 수+질병재해자 수)+⑩(수급인 사고재해자 수 합계+질병재해자 수 합계)
- ⑮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(‰): ⑬(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)/⑫(도급인·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) × 10,000
- ⑯ 도급인·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(%): ⑭(도급인·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)/⑫(도급인·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) × 100